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특강

월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노량진 1544-0336	인천 1544-1661	대구 1522-6112	부산 1522-8112	광주[062] 514-4560
제주[064] 722-8140	전북[063] 270-4144	경기(기숙형) 1599-9361	온라인 1544-5006	police.willbes.net

2021년 승진대비 개정법률

2020. 12. 31 (목)

담당 : 신 광 은 교수

훈방닷컴 검색 <http://www.hunzzang.com>

□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21.1.1 시행)

1.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1. 검사와 일반사법경찰관리의 관계(대등 협력 관계) (개정법 제195조)

-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제1항)
- (2)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검찰청 직원과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지휘감독관계 유지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소·재판 관련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대통령령 제6조)
- ② 대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간에 수사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수사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수사기관협의회를 둔다.(대통령령 제9조)

< 비교 : 검사의 수사지휘 조항 삭제 >

-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구법 제196조 제1항)
-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법 제196조 제3항)
- ※ 검찰청 직원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계속 검사의 지휘감독 유지

2.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개정법 제197조의2)

- (1) 검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1항)
 - ①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 (2)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해야 하고,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송부받지 못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보완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서류와 증거물을 대출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등사할 수 있다.(대통령령 제60조)
- (3)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항)
- (4)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제3항)

3. 검사의 시정조치 및 사건송치 요구 (개정법 제197조의3)

- (1)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제1항)

Tip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대통령령 제45조)
- (2)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제2항)

Tip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기록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대통령령 제45조2항)
- (3)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제3항)

Tip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시정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 요구의 통보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대통령령 제45조3항)
- (4)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4항)

Tip 사법경찰관은 시정조치 요구를 통보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대통령령 제45조3항)
- (5)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5항)

Tip 검사는 사건송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대통령령 제45조1항)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특강

일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노량진 1544-0336	인천 1544-1661	대구 1522-6112	부산 1522-8112	광주[062] 514-4560
제주[064] 722-8140	전북[063] 270-4144	경기(기숙형) 1599-9361	온라인 1544-5006	police.willbes.net

2021년 승진대비 개정법률

2020. 12. 31 (목)

담당 : 신 광 은 교수

훈방닷컴 검색 <http://www.hunzzang.com>

(6)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제6항)

Tip 사법경찰관은 서면으로 사건송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대통령령 제45조6항)

Tip 검사는 공소시효 만료일의 임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별도의 송치기한을 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받은 송치기한까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대통령령 제45조7항)

(7)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제7항)

Tip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서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대통령령 제46조)

(8)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제8항)

Tip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고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대통령령 제47조)

4. 수사 경합시 검사의 사건송치 요구 (개정법 제197조의4)

(1)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송치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Tip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대통령령 제49조)

(2)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Tip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경합과 관련하여 동일한 범죄사실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기록의 상호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영장 청구·신청의 시간적 선후관계는 검사의 영장청구서와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가 각각 법원과 검찰청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된다.(대통령령 제48조)

II. 수사의 개시

1. 수사의 개시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대통령령 제16조)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의 청구 또는 신청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위 (2)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혐의자 및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특강

일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노량진 1544-0336	인천 1544-1661	대구 1522-6112	부산 1522-8112	광주(062) 514-4560
제주(064) 722-8140	전북(063) 270-4144	경기(기숙형) 1599-9361	온라인 1544-5006	police.willbes.net

2021년 승진대비 개정법률

2020. 12. 31 (목)

담당 : 신 광 은 교수

홈페이지 <http://www.hunzzang.com>

2. 검사의 수사 범위(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1) 중요 6대 범죄

- ①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금,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의료리베이트 범죄 등을 규정
- ② 경제범죄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관세, 공정거래, 금융증권범죄, 산업기술유출, 마약수출입 범죄 등을 규정
- ③ 공직자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상 범죄를 규정
- ④ 선거범죄로 공무원의 정치관여, 공직선거·위탁선거·국민투표 등 관련 범죄를 규정
- ⑤ 방위사업범죄로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범죄를 규정
- ⑥ 대형참사범죄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재난과 관련하여 범한 범죄를 규정
(국가 중요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범죄 X)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 나목]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 나목]

(2)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3) 위 (1), (2)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3. 검사의 사건이송(제18조)

(1)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을 검찰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 ①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 등이 접수된 때
- ②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 수사 중 범죄 혐의 사실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때. 다만 구속영장이나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 ① 법 제197조의4 제2항 단서(수사의 경합)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때
- ② 그 밖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
- ③ 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해당 수사기관에 함께 송부해야 한다.

III. 강제수사

1.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개정법 제221조의5)

- (1)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1항)
- (2)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둔다.(제2항)
- (3)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제3항)
- (4)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제4항)
- (5)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제5항)

2. 압수·수색·검증에서 영장주의 예외(체포·구속 목적 수색) ※ 2019.12.31.시행

-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장에 의해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현행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 (2)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현행법 제137조)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특강

월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노량진 1544-0336	인천 1544-1661	대구 1522-6112	부산 1522-8112	광주[062] 514-4560
제주[064] 722-8140	전북[063] 270-4144	경기(기숙형) 1599-9361	온라인 1544-5006	police.willbes.net

2021년 승진대비 개정법률

2020. 12. 31 (목)

담당 : 신 광 은 교수

홍팡닷컴 검색 <http://www.hunzzang.com>

III. 경찰의 수사의 종결

1. 종결형태(대통령령 제51조)

- (1) 법원송치
- (2) 검찰송치
- (3) 불송치 : ㉠ 혐의없음 ㉡ 죄가안됨 ㉢ 공소권 없음 ㉣ 각하

Tip 형법 제10조 제1항(심신장애인)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나 기소되어 사실심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 (4) 수사중지 : ㉤ 피의자중지 ㉥ 참고인증지

Tip 사법경찰관은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 (5) 이송
- (6) 법원송치

2. 사건 송치(혐의 인정되는 경우)

- (1)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개정법 제245조의5 제1호)
- (2) 검사는 송치사건 및 관련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Tip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대통령령 제59조)

< 비교 : 필요적 송치 의무 삭제 >

○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구법 제196조 제4항)

3. 불송치(혐의 인정되는 경우 이외 기타)

(1) 관계서류와 증거물 송부 (개정법 제245조의5 제2호)

-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사건을 포함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검사의 재수사 요청 (개정법 제245조의8)

-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대통령령 제63조)
 - Tip 다만,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나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 ㉡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 그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대통령령 제63조)
-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재수사** 하여야 한다.
 - ㉢ 사법경찰관이 재수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대통령령 제64조)
 - ㉣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 ㉤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
 -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을 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대통령령 제64조)
 - ㉦ 다만,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결과만으로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거나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대통령령 제64조)
 - ㉧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소인 등의 이익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대통령령 제65조)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특강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노량진 1544-0336	인천 1544-1661	대구 1522-6112	부산 1522-8112	광주[062] 514-4560
제주[064] 722-8140	전북[063] 270-4144	경기(기숙형) 1599-9361	온라인 1544-5006	police.willbes.net

2021년 승진대비 개정법률

2020. 12. 31 (목)

담당 : 신 광 은 교수

훈장닷컴 검색 <http://www.hunzzang.com>

(3)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와 이의신청

①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개정법 제245조의6)

사법경찰관은 불송치의 경우 검사에게 서류 등을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개정법 제245조의7)

㉠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수사종결의 통지(대통령령 제53조)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종결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2)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해당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법 제197조의3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Tip 사법경찰관은 고소인등에게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해야 한다.

IV. 기타

1. 검사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법 제312조 제1항)

※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2022. 1. 1. (제312조 제2항의 삭제는 2021. 1. 1.부터 시행)

< 비교 : 제312조 제1, 2항 >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2.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2019.12.31.시행)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3. 제416조(준항고) (2019.12.31.시행)

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② 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 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외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특강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노량진 1544-0336	인천 1544-1661	대구 1522-6112	부산 1522-8112	광주[062] 514-4560
제주[064] 722-8140	전북[063] 270-4144	경기(기숙형) 1599-9361	온라인 1544-5006	police.willbes.net

2021년 승진대비 개정법률

2020. 12. 31 (목)

담당 : 신 광 은 교수

훈장닷컴 검색 <http://www.hunzzang.com>

□ 통신비밀보호법

○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2019.12.31.시행) (신설)

1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및 제4조의 죄

○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2019.12.31.시행)

⑦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2개월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⑧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 「형법」 제2편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중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및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2. 「군형법」 제2편 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및 제12장 위령의 죄 중 제78조·제80조·제8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죄

⑨ 법원은 제1항·제2항 및 제7항 단서에 따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2021.2.9.시행) (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情報搜查機關의 長"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제1항 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하되, 제1항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4월의 범위 이내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는 때에는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6조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법원"은 "고등법원 수석판사"로, "제5조 제1항"은 "제7조 제1항 제1호 본문"으로, 제6조 제2항 및 제5항 중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는 각각 "통신제한조치"로 본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에 관한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2(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2020.3.24.시행) (신설)

① 검사는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제6조 또는 제8조(제5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통신제한 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을 제12조 제1호에 따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하여 보관(이하 이 조에서 "보관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보관등의 승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제6조 또는 제8조(제5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통신제한 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의 보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등의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신청일부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그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청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경위, 취득한 결과의 요지, 보관등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
2.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의 목록
3.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 다만, 일정 용량의 파일 단위로 분할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관등을 승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승인서"라 한다)를 발부하며,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특강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노량진 1544-0336	인천 1544-1661	대구 1522-6112	부산 1522-8112	광주(062) 514-4560
제주(064) 722-8140	전북(063) 270-4144	경기(기숙형) 1599-9361	온라인 1544-5006	police.willbes.net

2021년 승진대비 개정법률

2020. 12. 31 (목)

담당 : 신 광 은 교수

훈방닷컴 검색 <http://www.hunzzang.com>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종료일부 14일**(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하여야 하고, 법원에 승인청구를 한 경우(취득한 전기통신의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4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승인서를 발부받거나 청구기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한 전기통신을 **폐기하여야** 한다.
-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한 때에는 폐기의 이유와 범위 및 일시 등을 기재한 폐기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의자의 수사기록 또는 피내사자의 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하고,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2019.12.31.시행)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 제2조 제11호 바목·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
2.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2019.12.31.시행)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참고인중지결정은 제외한다)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설)
2. 기소중지결정·참고인중지결정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제6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신설)
3.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제6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신설)

< 참고 법령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089호, 2021.1.1. 시행)

제5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전(全)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상호협력의 원칙)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및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소·재판 관련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협의의 지연 등으로 수사 또는 관련 절차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내란, 외환, 선거, 테러, 대형참사, 연쇄살인 관련사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사건 등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특강

윌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노량진 1544-0336	인천 1544-1661	대구 1522-6112	부산 1522-8112	광주[062] 514-4560
제주[064] 722-8140	전북[063] 270-4144	경기(기숙형) 1599-9361	온라인 1544-5006	police.willbes.net

2021년 승진대비 개정법률

2020. 12. 31 (목)

담당 : 신 광 은 교수

훈방닷컴 검색 <http://www.hunzzang.com>

제8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1. 중요사건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제시·교환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2.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7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3. 법 제197조의3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4. 법 제197조의4 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나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경우 수사를 계속할 주체 또는 사건의 이송 여부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5. 법 제222조에 따라 변사자 검시를 하는 경우에 수사의 착수 여부나 수사할 사항 등에 대해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245조의8 제2항에 따른 재수사의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7. 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조사자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하게 된 경우
- ②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경우 해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협의에 따른다.

제9조(수사기관협의회)

- ① 대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간에 수사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수사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수사기관협의회를 둔다.
- ② 수사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한다.
1. 국민의 인권보호, 수사의 신속성·효율성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2. 국가적 재난 상황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제1항의 어느 한 기관이 수사기관협의회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 ③ 수사기관협의회는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제1항의 어느 한 기관이 요청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회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제32조(체포·구속영장 집행 시의 권리 고지)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진술거부권의 내용은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한다.
-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그 권리를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2020.5.19.시행)

-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특강

일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노량진 1544-0336	인천 1544-1661	대구 1522-6112	부산 1522-8112	광주(062) 514-4560
제주(064) 722-8140	전북(063) 270-4144	경기(기숙형) 1599-9361	온라인 1544-5006	police.willbes.net

2021년 승진대비 개정법률

2020. 12. 31 (목)

담당 : 신 광 은 교수

훈망닷컴 검색 <http://www.hunzzang.com>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20.8.5.시행)

○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제31조의2) (신설)

1.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 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제1항)
2.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직업, 경제력, 가족상황, 주거상태, 생활환경 및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제2항)
3. 제2항의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3항)
4.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 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4항)

○ 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조의5) (신설)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2. 보석이 취소된 경우
3.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라 보석조건이 변경되어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1.1.시행)

I.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1.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의 설치(제3조 제1항)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 제1호 다목, 카목, 파목, 하목(법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제3조 제2항, 제3항)

- (1)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 (2)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II.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직(제4조)

1.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처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제5조 제1항)
2.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III.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무와 권한

1. 고위공직자 범죄 등 수사 및 공소제기, 유지
 - (1) 수사처검사는 법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본인 및 가족의 고위공직자 범죄 및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제20조 제1항)
 - (2)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제23조)
 - (3)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제25조 제1항)
 - (4)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제27조)
2. 고위공직자 범죄 등 이외의 사건
 - (1)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 이외의 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6조 제1항)
 - (2)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6조 제2항)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특강

월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노량진 1544-0336	인천 1544-1661	대구 1522-6112	부산 1522-8112	광주(062) 514-4560
제주(064) 722-8140	전북(063) 270-4144	경기(기숙형) 1599-9361	온라인 1544-5006	police.willbes.net

2021년 승진대비 개정법률

2020. 12. 31 (목)

담당 : 신 광 은 교수

홍팡닷컴 검색 <http://www.hunzzang.com>

IV.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제24조)

1.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4.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V. 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제25조)

1.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VI. 용어의 정리(제2조)

1. 고위공직자

다음의 어느 하나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 가. 대통령
-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 카. 검찰총장
-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 파. 판사 및 검사
-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 거. 장성급 장교
-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 범죄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 바.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9조의 죄
- 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죄
-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특강

월비스
신광은 경찰학원

노량진 1544-0336	인천 1544-1661	대구 1522-6112	부산 1522-8112	광주 ^[062] 514-4560
제주 ^[064] 722-8140	전북 ^[063] 270-4144	경기(기숙형) 1599-9361	온라인 1544-5006	police.willbes.net

2021년 승진대비 개정법률

2020. 12. 31 (목)

담당 : 신 광 은 교수

훈팡닷컴 검색 <http://www.hunzzang.com>

4. 관련범죄

-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 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 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 형사소송규칙의 개정 (2021.1.1.시행)

* 제100조(준용규정) 제3항 (신설)

③ 제96조의3(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 전에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의 규정은 구속영장의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 청구에 준용한다.

* 제134조의2(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 (개정) <개정 2020. 12. 28. / 시행 2021. 01. 01.>

개정 전	개정 후
① 검사는 피고인이 된 피의자 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① 검사는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가 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조사 장소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진술과 조서 기재내용의 동일성을 다투는 부분의 영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시각	② 삭제
⑥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은 검사가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⑥ 삭제

* 제134조의4(영상녹화물의 조사) (개정) <개정 2020. 12. 28. / 시행 2021. 01. 01.>

개정 전	개정 후
① 법원은 검사가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한 경우 이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u>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u> 그 영상녹화물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 봉인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① 법원은 검사가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한 경우 이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u>원진술자와 함께</u>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영상녹화물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 봉인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② 제1항의 영상녹화물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에 관한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인 피고인 아닌 자도 제1항과 같은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 12. 28.>